

국토교통부 훈령 제1671호
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1670호, 2023.10.26.)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

2023년 10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 이유

- 방음시설 설치 최소화 및 교육시설 인근 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한 쾌적한 공공주택지구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시점부터 고려
-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(‘23.9월) 마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 전체 평균용적률 제한 완화

2. 주요 내용

- 가.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시 도로 주변에 교통소음 영향이 적은 용도의 시설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(제12조 제9항 신설)
- 나.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와 학생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 등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하여 교육환경 보호(제12조 제10항 신설)
- 다.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용적률 제한 완화(제20조제1항2호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부처협의 완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행정규제 없음

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

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, 제12조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20조 제1항 제2호 “220”을 “250”으로 개정한다.

-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주변에는 교통소음에 영향이 적은 시설이 우선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.
- ⑩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시설과 제13조제3항의 도시지원시설용지(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에서 사목의 시설용지, 단 마목의 시설용지는 제외한다) 등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지구계획 수립에 대한 적용례)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 지구계획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(지구계획 지표기준에 대한 적용례)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지구계획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시설과 제13조제3항의 도시지원시설용지(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에서 사목의 시설용지, 단 마목의 시설용지는 제외한다) 등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제20조(지구계획 지표기준)

① (생략)

1. (생략)

2. 용적률 : 공동주택건설용지 전체 평균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220퍼센트 이하, 주거지역 등 그 이외의 경우에는 22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획할 수 있다.

제20조(지구계획 지표기준)

①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 ----- 250 -----

 --250-----
 -----.